

2025년도 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 스위스 양국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의 2025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1. 사업 개요

1 지원 목적

- 한-스위스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발전 도모
 -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지원*

* 스위스족 지원 주체 : 스위스국립과학재단(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NSF)

※ 한국측 연구지원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며 스위스측 연구지원전문기관은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SNSF)이 담당함.

② 사업 내용 및 세부 지원 분야

- 과제형태 : 단위과제(국제공동연구)
 - 지원분야
 - Quantum computing / simulation (양자 컴퓨팅 / 시뮬레이션)
 - Quantum communications and networks (양자 통신과 네트워크)

- Quantum sensing / measurement (양자 센싱 / 계측)
 - Fundamentals of Quantum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양자정보과학의 원천연구)
 - Quantum ethics (양자 윤리)
- 지원기간 : 4년 (2025.10.1. ~ 2029.9.30.)
- 지원기간 중 재단은 SNSF와 협의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점검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 연구책임자는 워크숍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
- 지원규모 : 과제당 연 300백만원 이내 / 10과제 이내
-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경비 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

③ 지원 조건

- (연구팀) 국내-국외 양측을 대표하는 공동 연구책임자 2인(양측 각 1인 : PI, Co-PI) 이상으로 구성(인원수 제한 無)
- (연구방법) 상호 인력교류 중심의 협력연구
 - ※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 우리측 연구자가 앞선 연구역량을 공유받고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과제 우대 가능(한국측만 적용)
- (필수성과물) 연구기간 동안 연구팀별 국제학술대회 2편, SCI급 논문 2편
 - ※ 연구개시 후 3년차에 성과발표를 위한 해외 공동연구 책임자가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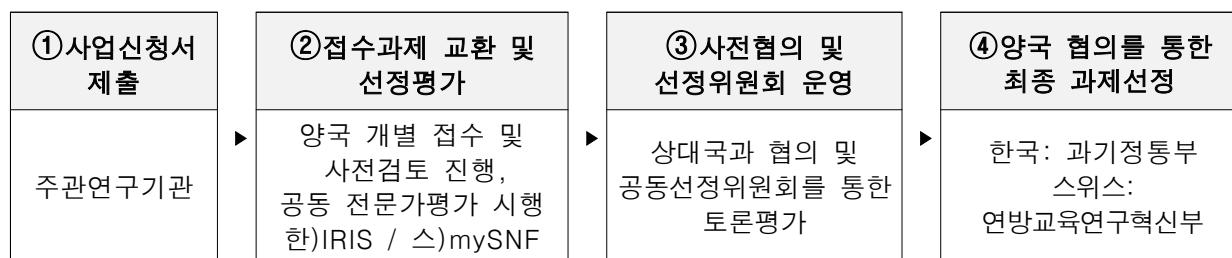
④ '25년도 지원 규모 및 방식

- 과제별 약 4년 동안 과제당 연간 (한측)3억 원, (스위스측)20만 스위스프랑(CHF) 규모로,
 - 양국 정부가 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진에게 각각 지원
 - 지원기간/연구비 : 48개월('25.10~'29.9) / 과제당 총 12억 원 이내

보안등급		일반	
과제 수		10개 내외	
과제당 연구비		연 300백만원 이내	
기간 및 연구비	총	48개월 (2025.10.1.~ 2029.9.30.)	1,200백만원
	1차년도	3개월 (2025.10.1. ~ 2025.12.31.)	75백만원
	2차년도	12개월 (2026.1.1. ~ 2026.12.31.)	300백만원
	3차년도	12개월 (2027.1.1. ~ 2027.12.31.)	300백만원
	4차년도	12개월 (2028.1.1. ~ 2028.12.31.)	300백만원
	5차년도	9개월 (2029.1.1. ~ 2029.9.30.)	225백만원

* 상기 지원규모는 정부예산(안) 확정 내용 및 스위스와의 협의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협약 시 달라질 수 있음

5 과제 신청·선정 방법 및 절차



* 평가절차는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① 과제 신청 : 한-스위스 공동연구책임자가 동일 서류를 자국측 안내에 따라 제출
(한쪽이라도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한 것으로 간주)

* 스위스측 공고 사이트 :

- 공고: <https://www.snf.ch/en/vZ7aoI3dnNgCJrLg/news/joint-call-for-proposals-with-south-korea-in-the-quantum-domain>
- 접수 포털: <https://portal.snf.ch/core/landing-page>

(한국 측 연구자는 스위스 측 연구자가 SNSF 포털을 통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국 측 연구자의 CV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한국 측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 관련 서식은 별첨1(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별첨2(증빙자료 서식)자료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파일받기 가능

② 요건 검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③ 1차 평가 : 양국 전문기관이 1차 전문가 서면 평가를 통해 과제에 대한 평가 의견서 및 평가점수 작성

한 국 측

- 평가위원회(패널별 3인 이상으로 구성)를 통한 서면평가 실시 (평가의견서 및 평가점수 작성)

④ 2차 양국 통합평가 :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2차 전문가 패널 평가 및 양국 정부 협의를 통해 10개 지원과제 도출

양 국

- 양국 전문가 패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가 실시
(9월 초순 경 서울 평가회의장에서 평가 실시)
※ 스위스측 우선순위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상위순위 외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⑤ 지원과제 확정 :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⑥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⑥ 선정평가 주안점

- 그간 지원과제 및 이번 신청과제의 국가, 기술 분야, 성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선정평가 평가지표(안) >

평가 주안점	배점
• 과학적 연관성, 독창성, 주제의 우수성	25
• 연구 방법 및 실현의 적합성	25
• 국내/상대국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경험 및 전문성	25
• 양자 간 상호보완성 및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25

※ 향후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한국측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 스위스측은 SNSF 관련 규정 준수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 스위스 측 연구책임자의 자격 등 세부내용은 SNSF 공고문 및 안내 참고

□ 신청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 (<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단, 해당 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
- ※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4]의 예외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제 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것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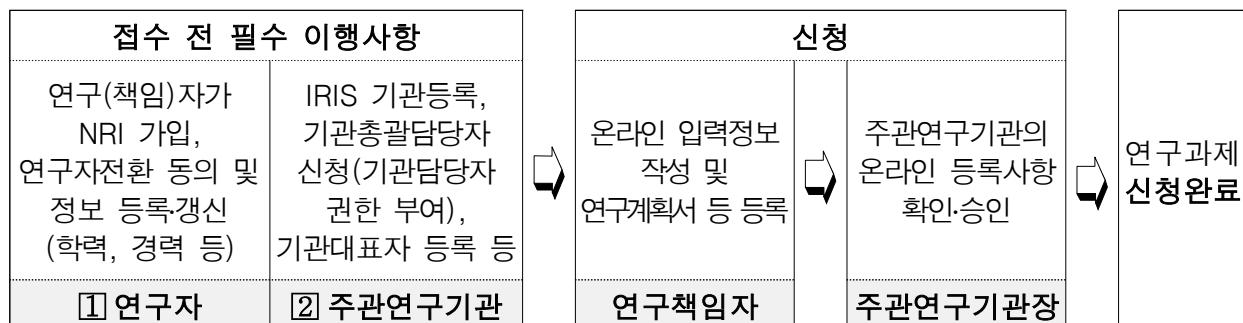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 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 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중복 신청 제한) 본 사업 내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2025년도 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프로그램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 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5.1.22.(수) ~ 2025.2.25.(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 기간	2025.2.25(화) ~ 2025.2.27.(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 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영문 사업신청서는 스위스 측 연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양측 개별양식을 활용하여 각각 제출. 단, 양국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연구 주안점, 연구목표 등의 업무영역 등을 명확히 구별해야 함
- 한국 측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스위스 측 연구자와 협의하여 영문 사업신청서 상의 ‘Specific Research Field’에 상대국 연구자와 동일한 연구분야를 기술할 것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과제의 경우, 스위스측 연구자가 상대측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
-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5.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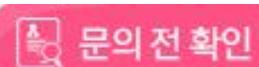
일정	추진내용
2025.1월	신규과제 모집공고(본공고)
2025.1.22.~2.2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5.1.25.~2.27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5.4~6월	1차 서면평가(각국)
2025.9월 초	공동패널 평가(한국에서 실시)
2025.9월	양국 간 협의
2025.9월 중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25.10.1	선정과제 연구개시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문의처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 · 규정 · 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 · 규정」 → 「공통 법 ·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확인
- 연구 · 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 · 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② (접수, 양식)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양자기술단
 - 전화 : 042) 869-7835, 7832/E-mail : jae00.hwang@nrf.re.kr
- ③ (선정평가)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2팀
 - 전화 : 042) 869-7746/ E-mail : mhlee@nrf.re.kr
- ④ (스위스 측 문의) 스위스 SNSF (스위스국립과학재단)
 - Ms. Andrea Landolt : andrea.landolt@snf.ch
- ⑤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양자과학기술산업팀
 - 전화 : 044) 202-6875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 (온라인 입력용) 연구개발계획서(PART1, PART3)
- (파일 업로드용) 국문 연구개발계획서(PART2, 과제요약 포함)

2. 증빙자료 서식

- (필수) 영문 연구개발계획서(파일 업로드용 MS Word 파일)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준수서 약서
- (해당시)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 확약서

3. IRIS 관련 매뉴얼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KISTEP IRIS운영단)
-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 정보 등록 매뉴얼

4. 신규과제 신청 FAQ